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안성아양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장소(주소)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659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 도시철도( )
2.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1. 옥상층 : 102동, 104동, 106동, 108동
중계장치 설치장소	1. 옥상층 : 102동, 104동, 106동, 108동 2. 지하1층 : 동통신실(102동, 104동, 106동)
접지단자 위치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건본주택에 설치 위치 공개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합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합의사항	"상세 합의 결과" 참조

※ 건축주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제 35조~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합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5년 03월 31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주)금성백조주택	김영환
대리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황성택, 최홍남 (인동)의합

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